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검 토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I 국제통상협력실소관

1.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192	172	-	20	
의전관리	192	172	-	20	

○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의 '94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9천2백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421억5천1백만원의 0.01%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현액에서 89.6%인 1억7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4%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2. 검토내역 및 의견

'94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9천2백만원중 10.4%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 집행잔액 8백만원 (40%)
- 제도개선 5백만원 (25%)
- 여건변경 7백만원 (35%)으로

각각 기인하고 있으며

첫 째,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등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집행 잔액이며

둘 째, 여건변경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되었던 미국 아이다호주의 본도 방문계획 취소와 일본, 중국에서의 방문인원 및 방문기간 축소로 인한 잔액이며

셋 째,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국제관계자문대사의 결원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데서 기인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성립후 여건변동등 사유발생시는 이를 조정, 부족재원에 활용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Ⅱ 지역경제국 소관

1.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19,237	18,532	175	530	
지역경제관리	861	847	-	14	
상징관리	117	107	-	10	
노정관리	1,832	1,519	-	313	
연료대책	11	5	-	6	
가스관리	9	5	-	4	
광공업관리	1,415	1,321	58	36	
중소기업관리	10,723	10,467	117	139	
관광관리	282	274		8	
관광지개발	3,987	3,987		0	

○ 지역경제국 소관의 '94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2억3천7백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5,421억5천1백만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현액에서 97.3%인 187억4천7백만원이 지출 및 이월되었고, 2.7%에 해당하는 5억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2. 검토내역 및 의견

1994년도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2억3천7백만원중 2.7%에 해당하는 5억3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바

○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 | | |
|-----------|-----------------|
| - 예산집행 잔액 | 1억5천9백만원(30.0%) |
| - 집행사유미발생 | 1천5백만원(2.8%) |
| - 계획변경취소 | 3억5천6백만원(67.2%) |

으로 각각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첫 째, 지역경제 관리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억6천1백만원중 1.6%에 해당되는 1천4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서 기인됨.

둘 째, 상정관리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1천7백만원중 8.6%에 해당되는 1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운영수당,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서 기인됨.

셋 째,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억3천2백만원중 17.1%에 해당되는 3억1천3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 | |
|----------|----------|
| - 집행잔액 | 8백만원 |
| - 사유미발생 | 2백만원 |
| - 계획변경취소 | 3억3백만원으로 |

운영수당,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단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초 미륵근로자 휴양시설 보조비로 충주시에 3억1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건립예정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국립공원위원회심의사항으로 심의결과 건립 불가능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불가피하게 3억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데서 기인됨.

넷째,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천1백만원의 54.5%에 해당되는 6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집행잔액 3백만원
- 사유미발생 3백만원으로

보상금과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규정에 의거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재료비로 도내에서 생산 시판되는 품질대상인 "열" 표시 상품이 없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3백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데서 기인됨.

다섯째, 가스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백만원의 44.4%에 해당되는 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 집행잔액 1백만원
- 사유미발생 3백만원으로

운영수당, 일반수용비등의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과 가스사고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불량가스용품 수집 검사재료비로 3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사업추진시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집검사를 실시하였기에 이중검사 방지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추진 생략으로 당초 계상되었던 재료비 3백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한 데서 기인됨.

여섯째,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억1천5백만원의 2.5%에 해당되는 3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4.1%에 해당되는 5천8백만원이 이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 이월액 5천8백만원

- 집행잔액

3천6백만원으로

이월액에 있어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지역주민의 산업기술정보 욕구충족과 정보자료수집, 전문인력양성, 지역정보망구축을 위한 지역교육정보 D/B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산업기술정보원과 8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으로 '94. 11. 24 계약을 체결 '95년도로 사고 이월한 데서 기인됨.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링비등 단순 집행잔액과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집행잔액 3백만원, 우수품질 및 생산성향상기업 기술장려금 지급계획이 3개업체 1천5백만원중 1개업체 자격미달로 인한 집행내역 5백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예산 1억원은 25개 참여 업체중 23개 업체는 참여하고 2개 업체가 불참하여 미참여 업체 분담금 9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데서 기인됨.

일곱째, 중소기업관리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7억2천3백만원중 1.3%에 해당되는 1억3천9백만원의 불용액과 1.1%에 해당되는 1억1천7백만원이 이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 이월액

1억1천7백만원

- 집행잔액

8천4백만원

- 계획변경취소

5천4백만원으로

이월액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로써 '94년도에 지원 결정된 구조조정자금이 '95년도에도 계속 용자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명시 이월비가 발생한 데서 기인됨.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제세 및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의 단순 집행잔액과 외국 경제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을 출항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본관 청사입구 수출상품진열장 보수유지비

집행잔액, 공예품개발 장려금 1억3천7백만원중 집행잔액 7백만원,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로 25개를 지정하여 1업체당 4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예품개발심의회에서 5개 업체만 지정기로 결정하여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90억원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계획중 263억원이 용자지원되어 잔액 27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2천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데서 기인됨.

계획변경취소에 있어서는

해외전시판매장 설치비,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비; 기타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서울국제선물용품박람회, 해외시장개척사업비등 당초 계획이 변경된 데서 기인됨.

여덟째, 관광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억8천2백만원중 2.8%에 해당되는 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상금, 운영수당등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 보상금과 관광진흥축진대회 시상품, 관광설명회 감사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서 기인됨.

아홉째, 관광지개발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은 대부분 운영수당, 보상금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금번 예산편성시에는 회의개최회수등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감안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의 변경, 취소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치 않은 결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